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|
| 의안 번호 | |
|----------|--|

제출년월일 : 2009. 3. 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구립합창단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“구립합창단과 구립소년소녀합창단”으로 구분하고, (재)마포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성인여성의 평생교육 및 청소년의 소질 개발을 위해 합창단원의 자격 규정을 완화하고 부칙 조항에 경과 규정을 두어 합창단의 탄력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합창단의 명칭 분리(제2조)

-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”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소년소녀 합창단”

나. 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위탁 운영규정 마련(제3조)

-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(재)마포문화재단에 위탁

다. 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자격규정 마련(제7조)

- 합창단은 만 20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구민

- 소년소녀합창단은 관내 거주 및 관내 소재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생

라.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경과규정 마련(부칙 제2조2항)

- 2008년 8월 31일자 합창단 해축 당시 단원이었던 자 중 만 55세 초과 단원이 구립합창단에서 활동하기를 원할 경우 오디션을 거쳐 2009년 12월 31일까지 구립합창단의 단원으로 활동 가능

3. 개정근거 : 해당사항 없음

4. 조례안 : 따로붙임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09. 1. 22 ~ 2. 11(제출된 의견 없음)

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심의·의결(2009.3.26)

다.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

다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
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·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지역 문화·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구립합창단과 서울특별시마포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설치 및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가 설치하는 합창단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서울특별시 마포구립합창단(이하 “합창단”이라 한다)
2. 서울특별시 마포구립소년소녀합창단(이하 “소년소녀합창단”이라 한다)

제3조(운영) ① 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설치·운영한다.

② 구청장은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(이하 “문화재단”이라 한다)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,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물

품 및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,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
2. 구민의 정서함양 및 각종 행사시 공연을 통한 구민화합에 기여
3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화·예술 활동 참여

제5조(구성) ①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은 단장, 지휘자, 반주자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각 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. 다만, 제3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문화재단의 대표가 단장이 된다.

③ 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단원으로 하고, 소년소녀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하여 8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.

④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사무처리와 단원상호간 연락 등을 위하여 단원 중에서 약간의 임원을 둘 수 있다.

제6조(단장의 직무) 단장은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각각의 지휘자, 반주자 및 단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7조(단원의 자격) ① 합창단 단원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
1. 합창단은 만 20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구민(단, 지휘자와 반주자는 구민이 아니어도 됨)
2.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한 자로서 합창단 지휘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
3. 반주자는 음악반주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

②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
1. 소년소녀합창단은 관내 거주 및 관내 소재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생

2. 지휘자 및 반주자의 자격은 제1항제2호, 제3호와 같음
- ③ 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상한연령에 달하는 자는 해당년도 12월31일자로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보고,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제8조(위촉) ① 지휘자와 반주자를 포함한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.

②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위촉기간 만료 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.

제9조(해촉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운영상의 지시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
2.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거부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경우
3.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

제10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수탁자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에 대한 종합계획을 매년 10월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수탁자는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 등을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관리·운영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.

④ 수탁자는 예산 사용계획을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31일까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수탁자는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필요할 때는 관리·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.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.

제11조(지도·감독)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구청장의 지도·감독에 따라야 한다.

제12조(위탁의 취소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
2. 제11조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지도·감독에 따르지 않을 경우
3.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
4. 기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제13조(경비의 지원) 지휘자, 반주자, 단원 및 임원들의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참여는 봉사활동으로써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, 반주자 등에 대한 사례비 또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4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, 반주자, 단원 및 임원으로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, 위촉기간은 제8조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위촉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.

②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8월 31일자 합창단 해촉 당시 단원(단, 지휘자, 반주자 제외)이었던 자 중 만 55세를 초과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새로 구성되는 합창단의 단원으로 활동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오디션을 거쳐 2009년 12월 31일까지 합창단의 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.